

참고1 코로나19 고용유지지원금 개요

- ▶ (사업개요) 일시적 경영난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*가 휴업·휴직 등 고용유지조치를 하는 경우 인건비 일부 지원
 - * 재고량 50% 증가, 생산량·매출액 15% 감소 등 일정요건 충족 시 지원 가능
- ▶ (특별지원) 코로나 19로 인한 경영상 피해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에 대하여 인정 요건 완화, 지원금액 상향 적용
 - * 「국가감염병 위기경보」 해제 시까지

□ (지원요건) 전체 근로시간의 20%를 초과하여 휴업 실시, 또는 1개월 이상 휴직 실시

*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25조: 고용유지조치를 시작한 날(기준달)이 속한 달의 전체 피보험자가 기준 달의 6개월 전부터 4개월 전까지 월평균근로시간

○ 코로나19로 직접 피해를 본 사업장은 매출액 15% 감소 등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'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'로 인정하여 지원하도록 요건 완화(1.29.~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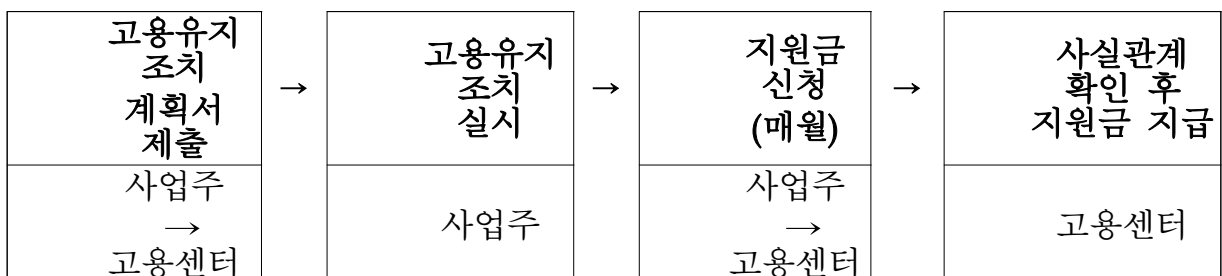
*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24조제8호: 당해업종, 지역경제상황 등을 고려하여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로 불가피하다고 직업안정기관이 인정하는 경우

□ (지원금액) 사업주가 지급한 인건비에 대한 지원 비율을 한시적 상향*(1일 상한액 6.6만원, 연 180일 이내)

* **2.1.~7.31. 기간 동안의 휴업·휴직: <우선지원대상기업> 2/3→3/4, <대기업> 1/2→2/3**

* **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기간(3.16.~9.15.) 동안의 휴업·휴직: <우선지원대상기업> 3/4 → 9/10, <대기업> 2/3 → 2/3~3/4**

□ 지원(신청)절차



참고2 코로나19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수준 상향 관련 지원 예시

□ 상향된 고용유지지원금은 '20.4.1.부터 6.30.까지 실시한 고용유지조치에 대해 유급휴업·휴직 수당의 90%를 지급합니다.

- 그 이전부터 고용유지조치를 계속한 사업주라도 실제 고용유지조치가 1달이라도 지원 기간(4.1.~6.30.)에 포함된다면 그 기간에 한해 상향된 지원금이 지급됩니다.

※ 사례1	※ 사례2
○ 고용유지조치를 '20.3.1.~'20.6.30.까지 실시한 경우	○ 고용유지조치를 '20.6.1.~'20.7.31.까지 실시한 경우
⇒ '20.3.1.~'20.3.31.(1개월) : 3/4	⇒ '20.6.1.~'20.6.30.(1개월) : 9/10
⇒ '20.4.1.~'20.6.30.(3개월) : 9/10	⇒ '20.7.1.~'20.7.31.(1개월) : 3/4

< 고용유지조치 실시 기간에 따른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예시 >

* (가정) 월급 200만원 근로자, 휴업수당 140만원 : 지원금 추가 상향 지원

구 분	고용유지조치 기간 / 지원 금액(실제 지급은 +1개월)			
	'20.3월	'20.4월	'20.5월	'20.6월
(사례 1) 고용유지조치 기간이 '20.3.1.~'20.6.30.	105만원	126만원	126만원	126만원
(사례 2) 고용유지조치 기간이 '20.6.1.~'20.7.31.	'20.6월	'20.7월	-	
	126만원	105만원		

< 참고: 우선지원대상기업의 범위: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 >

1. 산업*별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다음에 해당되는 기업

* 산업의 분류기호는 「통계법」 제22조에 따른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름

- ▶ 상시 근로자수가 500명 이하: 제조업
- ▶ 상시 근로자수가 300명 이하: 광업, 건설업, 운수업, 출판영상업, 사회지원서비스업, 과학기술서비스업, 보건업
- ▶ 상시 근로자수가 200명 이하: 도소매업, 숙박음식업, 금융보험업, 예술스포츠업
- ▶ 상시 근로자수가 100명 이하: 그 밖의 업종

2. 「중소기업기본법」 제2조제1항 및 제3항의 기준에 따른 기업은 1.의 근로자 수에 관계없이 우선지원대상기업에 포함

<1> 4.1. 부터 고용유지조치에 대해 상향된 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인가요?

- 그렇습니다. 4.1.부터 6.30.까지 실시한 고용유지조치에 대해 상향된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.
- 사업주가 3.1.부터 4.31의 기간에 고용유지조치를 하는 경우,
 - 3월분의 휴업수당에 대해서는 3/4, 4월분의 휴업수당에 대해서는 9/10에 해당되는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.

<2> 상향된 고용유지지원금은 특정 업종에만 지급되나요?

- 업종에 관계없이 경영상 어려움 등으로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시는 사업장이라면 누구든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.
 - 다만,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업장이어야 합니다.

<3> 5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도 신청 할 수 있나요?

- 네. 사업장 규모와 상관없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.

<4>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?

- 고용보험 홈페이지(www.ei.go.kr) 또는 관할 고용센터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.
 - ↳ ①고용보험 홈페이지(www.ei.go.kr) → ②상단의 “기업서비스” → ③“고용안정 장려금” → ④“고용유지지원금”에서 신청 가능
 - 사업주가 편한 방법을 선택하시면 됩니다.

<5>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절차는 어떻게 되나요?

- 먼저, 경영 악화 등으로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고용유지조치(휴업·휴직)를 실시하기 하루 전까지 “고용유지조치계획서”를 제출하셔야 합니다.

<6> 고용유지조치계획서 제출 후에는 어떻게 해야하나요?

- 고용유지조치계획서에 따라 고용유지조치(휴업·휴직)를 실시하시고 “고용유지지원금 신청서”를 제출하시면 됩니다.

<7> 고용유지조치 기간에 기존 계획과 다르게 근로자를 근무시키고 지원금을 지급 받을 수 있나요?*

* (유사 질의) ▲휴업시 임금을 계획서보다 적게 지급하는 경우 지원금 신청 ▲매출액 변동 등 고용유지 요건을 맞추기 위하여 관련 서류 위·변조하는 경우 등

- 안됩니다. 고용유지조치계획에 따라 휴업·휴직을 하지 않거나 기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는 경우,
 - 지급 제한·추가 징수(최대 5배)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

참고3 예외적 신규채용 기준 구체화

-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사정이 어려운 기업이 고용조정 대신 휴업, 휴직하는 경우 지원하는 제도로,
 - 휴업·휴직 후 대체 고용을 예방하기 위하여 고용유지조치기간 동안 신규채용을 하는 경우에는 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되나, 신규채용이 불가피한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*
 - *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2항
 - 다만,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인한 경영상 어려움과 업종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고용유지조치 기간 중 예외적 신규채용 기준을 확대해 달라는 요구에 대응하여 예외적 기준을 보다 구체화
- “예외적 신규채용 기준 구체화” 내용은 기존인력으로 재배치가 불가능하여 업무 특수성, 기존인력 재배치 등의 사유로 신규채용한 경우에 적용
 - 사업주 단위로 10% 범위 내에서 '20.9.30.까지의 고용유지조치 기간 중 신규채용은 가능한 경우 간략한 확인*을 통해 인정하고,
 - * 사업주 단위로 10% 범위 내에서는 “사업주 확인서”로 신규채용 불가피성 인정
 - 10% 범위를 초과하는 신규채용은 기존과 동일하게 사안을 면밀히 검토하여 인정 여부를 결정할 계획임

참고3-1 예외적 신규채용 기준 구체화

<1> 언제부터 변경된 신규채용 기준이 적용되나요?

- 예외적 신규채용 기준은 '20.4.27.부터 9.30.까지 실시한 고용유지조치에 대해 적용됩니다.
- 4.27. 시행 전 고용유지조치계획신고서를 제출하였더라도 그 계획에 따라 4.27.이후 지원금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적용됩니다.

<2> 무조건 신규채용이 허용되는 건가요?

- 아닙니다. 기존인력으로 재배치가 불가능한 경우에 한정하며, 사업주 단위로 10% 범위 내에서 '20.9.30까지의 고용유지조치기간 중 신규채용에 한하여 "사업주 확인서"를 통해 확인이 가능한 경우 신규채용을 허용합니다.
- 다만, 10% 범위를 초과하는 신규채용은 기존과 동일하게 기존인력으로 재배치가 불가능한 경우 등 사안을 면밀히 검토하여 인정 여부를 결정합니다.

<3> 예외적으로 신규채용을 허용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?

- 지방노동관서에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금 신청서 제출 시 고용유지조치기간 중 예외적 신규채용 관련 규정에 따라 사업장의 신규채용 예외 사유를 확인하는 "예외적 신규채용 사업주 확인서"<참고 3>를 제출하시면 됩니다.

<4>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문제는 없나요?

- 사업주확인서에 허위 기재하는 경우, 지급 제한(1년)·추가 징수(최대 5배)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

참고3-2 예외적 신규채용 사업주 확인서

□ 고용유지지원금의 지원요건을 확인하기 위하여 아래 사항을 확인하고자 하오니, 해당 사항에 체크표시(✓)해 주시기 바랍니다.

※ '20.4.29.부터 20.9.30까지 실시한 고용유지조치기간 중 신규채용에 한해 허용한다.(단, 세부 기준 시행 전 기 접수된 고용유지조치계획 신고서는 적용)

고용유지조치(휴업·휴직) 기간 중 신규 채용(휴업·휴직자의 대체채용 포함) 원칙은 유지하되, **직업안정기관의 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인정**

- (신규채용의 불가피성 원칙) 기존인력으로 재배치가 불가능하여 신규채용한 경우

확인사항	예	아니오
✓ 필수기능인력 필요분야에 자발적 퇴사자 발생 등 기존 인력으로 재배치가 불가능하여 신규채용한 경우(업무특수성)		
✓ 법령에서 등록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퇴사자를 대체할 관련 인력인 기술자를 채용한 경우(법령기준 충족)		
✓ 사업주가 예측할 수 없는 사유로 외국인근로자(E-9)가 당초 계획보다 앞당겨 입국한 경우(채용시기 변경)		
✓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다가 「파견근로자보호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직접 고용한 경우(직접 고용)		
✓ 퇴사자의 직무 내용이 동일해도 장소적으로 거리가 떨어져 있어 통근이 곤란하여 기존인력으로 대체 가능성이 없어 재배치가 불가능한 경우(지역적 거리)		
✓ 신규 사업때문에 신규채용이 필요하고, 기존인력으로 재배치가 불가능 경우(사업 확장)		
✓ 기존에 일용직으로 계속 근무하던 근로자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하여 외형상 신규채용에 해당하는 경우(기존인력 재배치)		
✓ 자진퇴사자의 직무가 상이하하여 기존인력으로 재배치가 불가능하여 신규채용한 경우(직무의 차이)		

위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였으며,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거나 지급받고자 한 경우에는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며 이미 지원된 지원금의 반환조치 및 부정수급액의 최고 5배 추가 징수, 1년의 범위 내에서 장려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.

년 월 일
 신청인(사업주) (서명 또는 인)

○○ 지방고용노동청(○○지청)장 귀하

참고4 코로나19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원 주요 내용

구분		일반	특별고용지원 업종
고용유지 지 원 금 (유급휴업· 휴직)	지원수준	우선지원대상기업 2/3 대규모기업 1/2~2/3	우선지원대상기업 90% 대규모기업 2/3~3/4
	지원한도	1일 6.6만원	1일 7만원(대규모기업 6.6만원)
고용유지 지 원 금 (무급휴직)	지원요건	- 무급휴직 전 1년 이내 유급휴업(3개월) - 무급휴직 실시(90일)	① 유급휴업 후 무급휴직 시행 시 - 무급휴직 전 1년 이내 유급휴업(1개월) - 무급휴직 실시(30일)
			② 유급휴업 없이 바로 무급휴직 시행 시 - 무급휴직 실시(30일)
지 원 한 도	지 원 한 도	1일 6.6만원과 평균임금의 50% 범위내 심사위원회에서 결정	① 유급휴업 후 무급휴직 시행 시 - 일반과 동일
			② 유급휴업 없이 바로 무급휴직 시행 시 - 월 50만원

참고4-1 코로나19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업종 범위 및 지원대상

□ 관광·공연업 등(지원기간: '20.3.16~9.15.)

- 고용보험에 등록된 업종코드가 지원대상 업종에 해당하거나,
 - 「관광진흥법」, 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」, 「해운법」, 「유선 및 도선 사업법」, 「항공사업법」, 「공연법」 등 개별법에 따라 신고·등록한 업체

< 업종별 지원대상 확인방법 >

업종	분류 기준	
여 행 업	업종코드	▶ N752(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)
	개별법	▶ 「관광진흥법」 제3조제1항제1호의 여행업이면서 제4조에 따라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등록된 업체
관광숙박업	업종코드	▶ 55101(호텔업) ▶ 55103(휴양콘도 운영업)
	개별법	▶ 「관광진흥법」 제3조제1항제2호의 관광숙박업*이면서 제4조에 따라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등록된 업체 * 호텔업(관광호텔업, 수상관광호텔업, 한국전통호텔업, 가족호텔업, 호스텔업, 소형호텔업, 의료관광호텔업), 휴양 콘도미니엄업
관광운송업	업종코드	▶ 49232(전세버스 운송업) ▶ 50111(외항 여객 운송업) ▶ 50121(내항 여객 운송업) ▶ 50201(내륙 수상 여객 및 화물 운송업) ▶ 50202(항만 내 여객 운송업) ▶ 51100(항공 여객 운송업)
	개별법	▶ 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」 제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2항에 따라 시·도지사에게 전세버스운송사업을 등록한 업체 ▶ 「해운법」 제4조제1항에 따라 해상여객운송사업(같은 법 제3조제1호~제6호)의 종류별로 항로마다 해양수산부장관의 면허를 취득한 업체 또는 같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 장관으로부터 해상여객운송사업 승인을 받은 업체 ▶ 「유선 및 도선 사업법」 제3조제1항에 따라 관할관청의 면허를 받거나 관할관청에 신고한 업체

업종	분류 기준	
		▶ 「항공사업법」 제7조제1항에 따라 국내항공운송사업 또는 국제항공운송사업 면허 를 취득한 업체 및 같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소형항공운송사업 등록 업체
공 연 업	업종코드	▶ R901 (창작 및 예술 관련 서비스업)
	개별법	▶ 「공연법」 제9조제1항에 따라 공연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등록한 업체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업체

□ **항공기취급업 등(지원기간: '20.4.27~9.15.)**

- 고용보험에 등록된 업종코드에 해당하거나 또는 개별법 등에서 정한 방법(면허, 등록, 소관부처 장관 확인 등)으로 확인된 업체

업종	분류 기준	
항공기취급업	업종코드	▶ 52939 (기타 항공 운송지원 서비스업)
	개별법	▶ 「항공사업법」 제44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항공기취급업을 등록한 업체 * 세부 지원대상 사업주 및 근로자(퇴직자 포함)는 7쪽 업종별 지원대상 확인방법 및 9쪽 흐름도 참조
면세점	업종코드	▶ 47130 (면세점)
	개별법	▶ 「관세법」 제174조, 제176조의2 및 제196조에 따라 세관장으로부터 보세판매장 특허 를 받은 업체
전시·국제회의업	업종코드	▶ 75992 (전시, 컨벤션 및 행사 대행업)
	개별법	▶ 「전시산업발전법」 제2조에 따른 전시사업자 로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확인 을 받은 업체 ▶ 「관광진흥법」 제3조제1항제4호의 국제회의업 이면서 제4조에 따라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등록한 업체
공항버스	개별법	▶ 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」 제4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 를 받은 업체 중 운행노선에 공항을 포함하고 있으며, 매출액 50% 이상 이 공항노선과 관련된 업체

□ 업종별 지원대상 확인 방법

○ 업종코드는 고용보험 사업장조회에서 업종으로 확인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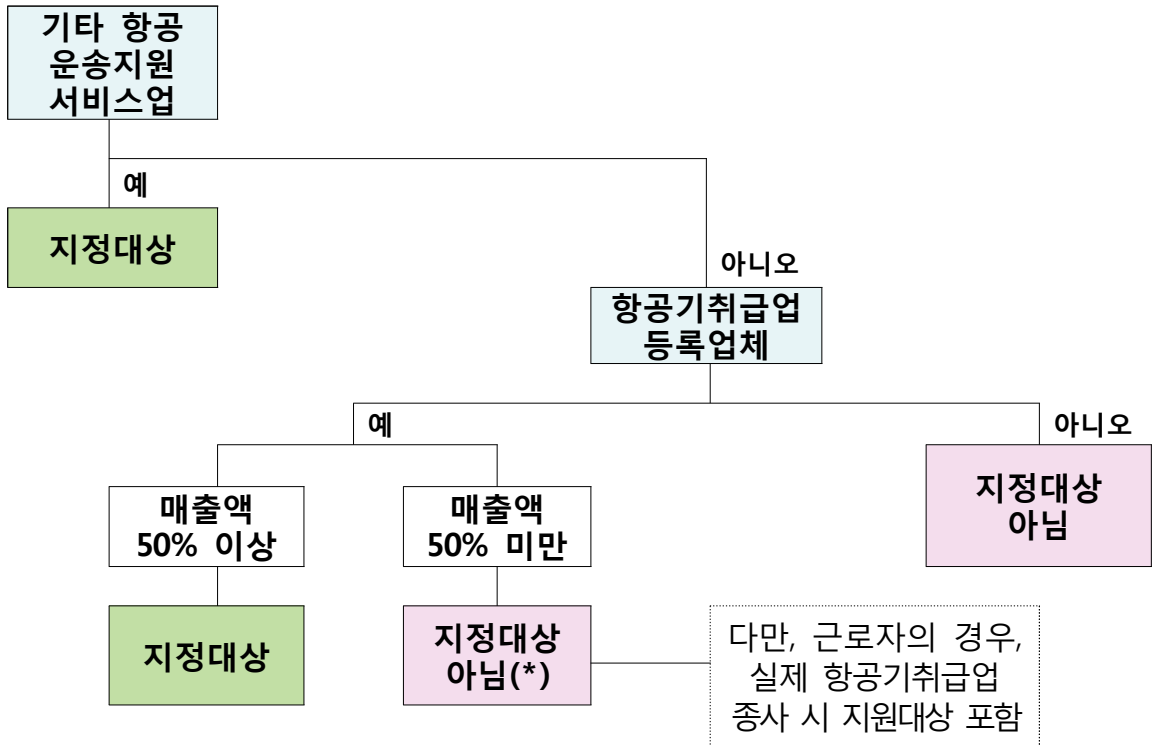
- 그 외 개별법에 따라 면허·등록·신고한 사업장은 소관부처에서 제공받은 지원대상 사업장 명단 또는 사업주·근로자가 제출한 등록(신고)증 등을 통해 확인 후 지원

< 개별법에 따른 지원대상 사업주 및 근로자 확인방법 >

업종	지원대상 사업주 확인방법	지원대상 근로자 확인방법
관광·공연업	<p>개별법에 따라 등록·신고한 업체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☞ 사업주가 제출한 등록(신고)증 등으로 확인 ☞ 본부에서 3.16. 지침시달 시 송부한 명단을 통해 확인하거나 소관부처에 확인 후 지원 	<p>업체 소속 근로자·퇴직자 전체 (종사업무 제한없음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☞ 고용보험 피보험자 이력조회로 확인 ☞ 회사의 등록(신고)증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소관부처 담당자에게 확인 후 지원
항공기 취급업	<p>항공기취급업 등록업체 중 매출액 50% 이상이 항공기취급업과 관련된 사업주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☞ 국토교통부 제공 자료로 확인 <p>* 다만, <u>고용유지지원금 중 무급휴직 신속 지원프로그램</u>은 항공기취급업 관련 매출액 50% 미만인 업체에서 항공기취급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도 지원 가능</p>	<p>① 소속업체가 항공기취급업 관련 <u>매출액이 50% 이상인 경우</u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☞ 업체 소속 근로자·퇴직자 전체가 지원대상(종사업무 제한없음) ☞ 고용보험 피보험자 이력조회로 확인 <p>② 소속업체가 항공기취급업 관련 <u>매출액이 50% 미만인 경우</u>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☞ 항공기취급업에 실제 종사하거나 또는 종사하였던 근로자·퇴직자만 지원대상 ☞ 고용보험 피보험자 이력조회 및 근로계약서(근무장소, 업무내용 확인), 공항출입증 등으로 확인
<항공기취급업 사업주 및 근로자 지원대상 판단을 위한 흐름도(9쪽) 참조>		

업종	지원대상 사업주 확인방법	지원대상 근로자 확인방법
면세점	보세판매장 특허를 받은 업체 ☞ 관세청 제공 자료로 확인	업체 소속 근로자·퇴직자 전체 (종사업무 제한없음) ☞ 고용보험 피보험자 이력조회로 확인
전시산업	전시사업자 로 확인받은 업체 ☞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자료로 확인	
국제회의업	국제회의업 으로 등록한 업체 ☞ 문화관광체육부 제공 자료로 확인	
공항버스	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업체 중 공항노선 으로 인한 매출액이 50% 이상인 업체 ☞ 국토교통부 제공 자료로 확인	

<참고1> 항공기취급업 사업주 및 근로자 지원대상 판단을 위한 흐름도



* 무급휴직 신속지원프로그램은 근로자에게 직접 지원하는 지원금이므로 매출액 50% 요건과 관계없이 항공기취급업에 종사할 경우 지원 가능

<참고2> 항공기취급업

- 항공기의 이·착륙 전후 지상에서 **항공기 운항에 필요한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**으로, 타인의 수요에 맞추어 항공기에 대한 급유, 항공화물 또는 수하물의 하역과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지상조업(地上操業)을 하는 사업(「항공사업법」 제2조제19호)

구 분		업 무 내 용	
항공기 취급업	지상 조업 사업	주기장 내 조업	· 항공기 유도 및 이동 · 항공기 객실청소 · 승객이동 서비스(스텝카, 램프버스 등 운용) · 항공기 전원공급 및 객실냉난방
		여객조업	· 승객 탑승 또는 출입국 관련 업무 · 항공기 운항정보 지원 · 여객안내 지원업무 등
	항공기 하역업	화물조업 (주기장 내)	· 화물 및 수하물의 하역
	항공기 급유업	급유조업 (주기장 내)	· 항공기 급유

참고4-2 특별고용지원업종 주요 Q&A

【지정 업종 및 지원대상 등 총괄】

1. 공항에서 조업 중인 인력공급업체 사업주입니다. 우리 업체도 특별고용 지원 업종 지원 대상에 해당할까요?

- 인력공급업체라 하더라도
「항공사업법」 제44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
‘항공기취급업’을 등록한 업체이면서
 - 매출액의 50% 이상이 항공기취급업과 관련된 업체라면
지원대상에 해당
- 다만, 「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」의 경우,
매출액 기준과 관계없이 지원할 예정임

2. 공항에서 조업 중인 인력공급업체 근로자입니다. 저도 지원 대상에 해당 할까요?

- 소속사업장이 인력공급업체라 하더라도
(매출액 기준에 따른 지원대상 제외업체 여부와 관계 없음)
「항공사업법」 제44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
‘항공기취급업’을 등록한 업체이고,
 - 본인이 항공지상조업에 종사한다는 것을 증명*할 수
있다면 생활안정자금 용자 등 근로자 지원사업의 대상에 해당

* 공항 출입증, 근무장소·업무의 내용 등이 기재된 근로계약서 등

3. 인력공급업체입니다. 매출액의 50% 이상이 항공기취급업과 관련된 업체만 특별고용지원 업종에 지정된 이유가 있나요?

- 이번에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추가 지정된 업종들은 既지정된 관광·공연업과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으면서 해외 상황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직접적인 피해가 큰 업종임
- 인력공급업체의 경우 항공지상조업 외에 다른 업종으로도 다수의 인력을 파견하는 경우가 있는 바,
 - 위와 같은 지정기준을 고려하여 매출액의 50% 이상이 항공기취급업과 관련된 업체로 한정하였음

4. 공항버스 운영업체입니다. 우리 업체도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원 대상에 해당할까요?

- 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」에 따라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업체 중
 - 운행노선에 공항을 포함하고 있으며, 매출액 50% 이상이 공항노선과 관련된 업체라면 지원대상에 해당

5. 공항버스 노선을 운영중인 노선버스업체입니다. 매출액의 50% 이상이 공항노선과 관련된 업체만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지정된 이유가 있나요?

- 이번에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추가 지정된 업종들은 既지정된 관광·공연업과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으면서 해외 상황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직접적인 피해가 큰 업종임
- 노선버스 업체 중 공항버스 운영 비중이 일부인 업체들이 있는 바,
 - 위와 같은 지정기준을 고려하여 매출액의 50% 이상이 공항노선과 관련된 업체로 한정하였음

6. 시내버스 운영업체입니다. 왜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지정이 되지 않았을까요?

- 이번에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추가 지정된 업종들은 既지정된 관광·공연업과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으면서 해외 상황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직접적인 피해가 큰 업종임
 - 따라서 국내 코로나19 확산 추이가 진정세로 들어서더라도 당분간 회복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산업들이 지정됨
- 향후 기 마련·추진중인 정부 지원책의 효과, 코로나19 고용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, 다른 업종들의 추가 지정 여부를 신중히 검토할 계획

7. 전시업체입니다. 우리 업체도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원 대상에 해당할까요?

-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세세분류에 따른 전시, 컨벤션 및 행사 대행업(75992)에 해당하거나
 - 「전시산업발전법」에 따른 전시사업자로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확인을 받은 업체라면 지원대상에 해당

8. 국제회의 기획업체입니다. 우리 업체도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원 대상에 해당할까요?

-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세세분류에 따른 전시, 컨벤션 및 행사 대행업(75992)에 해당하거나
 - 「관광진흥법」상 국제회의업이면서 동법 제4조에 따라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등록된 업체라면 지원대상에 해당

9. 새로 지정된 특별고용지원 업종에 대한 지원은 소급*되나요?

* 예) 관광공연업 등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원시기(始期)인 3.16로 소급가능한지?

○ 소급되지 않음

- 이번에 지정된 특별고용지원 업종에 대한 지원은 고시제정일부터 적용될 예정

10. 특별고용지원 업종에 지정된 업체는 무슨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?

○ 특별고용지원 업종에 지정된 업체는 유급휴직·휴업 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수준과 지원한도가 상향되고

- 노사합의에 따라 유급휴직 없이 무급휴직에 들어가는 경우 “무급휴직 지원 패스트트랙”에 따라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을 수 있음

○ 이 외에도 고용·산재보험료 납부기한 연장 및 체납처분 집행유예가 이뤄지고

- 건강·국민연금보험료의 경우 체납시 연체금 미부과 등의 혜택이 지원됨

11. 특별고용지원 업종 내 근로자는 무슨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?

○ 특별고용지원 업종 내 근로자에게는 근로자 생활안정자금융자 소득요건 완화 및 한도액 상향이 이루어짐

- 이 외에도 취업성공패키지Ⅱ의 실업자 소득요건이 면제되고 국민내일배움카드의 5년간 훈련비 지원금액이 상향 등의 혜택이 지원됨

12. 기존에 지정된 관광공연업 등 특별고용지원 업종의 지원내용과 달라지는 점이 있나요?

- 지원시기(始期) 즉, 지원이 시작되는 시점이 다를 뿐
- 지원내용 및 지원종료 시점(9.15.) 등은 동일

【무급휴업·휴직 고용유지지원금 관련】

1. 무급 휴업·휴직 고용유지지원금이 무엇인가요?

- 근로자 실직 예방과 생계안정을 목적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무급휴업·휴직을 실시하는 경우 무급휴업·휴직 기간 중 근로자에게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.(‘13.4월~)

2. 일반적 지원요건 및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?

1 지원요건 확인	2 무급 휴업·휴직 고용유지계획 신청서 제출 (무급 휴업·휴직 실시 30일 전)	3. 신청 승인 후 통보	4. 무급 휴업·휴직 실시 (휴업 30일 이상, 휴직 90일 이상)	5. 지원금 신청 및 지급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√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인지 √ 법령상 무급휴업·휴직 요건을 갖추었는지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√ 사업주가 신청 - 개별 근로자 동의를 포함한 노사 합의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√ 담당 고용센터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√ 신청한 계획서에 따라 무급 휴업·휴직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√ 사업주가 신청 √ 근로자에게 지급

① 먼저 ①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②법령상 무급휴업·휴직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. < 아래 구체적 요건 확인 >

①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 판단 기준*

* 다음의 기준 중 하나의 요건 충족

기준		제출 서류(예시)
재고량	50% 이상 증가(직전 년도 평균 대비)	재고대장
생산량	30% 이상 감소 (직전 3개월 평균, 직전년도 같은 달, 직전 년도 월 평균 대비)	생산대장
매출액		매출액 장부 손익계산서,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 POS, VAN로 확인된 매출액 등
재고량, 매출액 추이	재고량이 계속 20% 이상 증가 추세 또는 매출액이 계속 20% 이상 감소 추세 (직전 2분기 월 평균 대비)	재고대장, 생산대장 등

② 무급휴업·휴직 요건 충족(각각의 아래 요건 모두 충족)

기준		제출 서류
무급 휴업	1) (무급휴업 기간) 30일 이상 실시 2) (대상자) 피보험자 수가 다음의 피보험자 수 이상 참여 - 19명 이하: 50% - 99명 이하: 10명 이상 - 100명 이상 999명 이하: 10% - 1000명 이상: 100명 이상 3) 근로기준법에 따라 노동위원회 승인 4) 평균임금 50% 미만의 휴업수당 지급	1) 노동위원회 승인서 2) 노사협의회 회의록 또는 노사협약서, 개별근로자 동의서 등 3)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
무급 휴직	1) (무급휴업 기간) 90일 이상 실시 2) (대상자) 피보험자 수가 다음의 피보험자 수 이상 참여 - 99명 이하: 10명 이상 - 100명 이상 999명 이하: 10% - 1000명 이상: 100명 이상 3) 고용유지조치(휴업) 사전실시(무급휴직 전 1년 이내 3개월 이상) 4) 근로자대표와 합의에 따라 임금 등 지급하지 않아야 함	1) 노사협의회 회의록 또는 노사합의서, 개별근로자 동의서 등 2)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

② ①, ② 요건을 모두 갖추신 경우 무급 휴업·휴직 실시 30일 전까지 무급휴업·휴직 고용유지계획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갖추어 고용보험 누리집 (www.ei.go.kr) 또는 고용복지+센터 기업지원과(팀)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.

③ 제출하신 신청서를 바탕으로 고용센터에서 무급휴업·휴직 계획 등이 승인되면, 신청한 계획에 따라 무급휴업·휴직을 실시하신 이후 1개월 단위로 지원금 지급을 신청하시면 됩니다.

2-1. 누가 신청하나요?

- 무급휴업·휴직에 대한 노사합의를 거쳐 사업주가 무급 휴업·휴직 실시 30일 전에 신청하고, 지원금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됩니다.

2-2. 노사합의는 꼭 거쳐야 하나요?

- 근로자 권리 보호 및 사업주 도덕적 해이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노사합의는 필수적 요건입니다.
- 무급휴업·휴직의 경우 근로자 생계불안으로 노사갈등과 고용불안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포함한 노사합의를 전제로 무급 휴업·휴직 고용유지지원금이 지급됩니다.

3. 무급휴직 지원금은 10인 미만 기업은 신청할 수 없나요?

- 무급휴직 지원금은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노사대등성이 약해 사업주 일방의 결정에 따라 무급휴직이 실시될 가능성이 높아 근로자 권익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,
 - '13.4월 사업을 시행한 당시부터 무급휴직 대상 근로자가 10인 미만 사업장을 제외하고 있습니다.
- 10인 이상 근로자 사업장이라도 최소 10인 이상의 피보험자가 무급휴직을 하셔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
- 영세사업장(근로자 10인 미만) 무급휴직자는 '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' 또는 '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 사업'을 통해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.

4. 대기업도 신청할 수 있나요?

- 노사합의를 거친 경우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.

5. 다른 지원금과 중복 지원이 가능한가요?

- 고용촉진장려금, 고용창출장려금, 고령자고용연장지원금,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등과는 중복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.
- 또한, “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 사업” 등 유사사업과 중복 지원은 되지 않습니다.

6. 제출한 계획과 다르게 무급휴직을 실시해도 되나요?

- * (유사 질의) ▲ 무급휴직 대상근로자를 해당 기간 동안 근무시키는 행위
▲ 고용유지지원금 요건을 맞추기 위하여 관련 서류 위·변조하는 경우 등

- 안됩니다. 고용유지조치계획에 따라 무급휴업·휴직을 하지 않거나 기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는 경우,
 - 지급 제한·추가 징수(최대 5배)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
- 따라서, 무급 휴업·휴직 고용유지조치계획 신고 후 사유가 생겨 계획 변경이 필요하면 10일 전까지 온라인(www.ei.go.kr) 또는 방문하여 변경신고를 하고 고용센터의 승인을 받으셔야 합니다.

<특별고용지원업종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신속 지원>

7. 특별고용지원업종은 무급휴직 지원 기준이 다른가요?

- 그렇습니다. 현재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지정된 특별고용지원업종*은 노사합의에 따라 유급휴업 1개월 + 30일 이상 일정 비율 이상의 근로자들이 무급휴직을 실시하면 지원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.

* “코로나19의 영향으로 지정된” 특별고용지원업종이므로 조선업은 제외

□ 한편, 긴급한 경영상 어려움으로 유급휴업 실시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신속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하여, 다른 요건은 동일하나 1개월 유급휴업없이 30일 이상 무급휴직만 실시하여도 지원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.

□ 현행 요건은 그대로 유지되는 것(Two-Track)으로 지원 수준·기간 등을 고려하여 대상 근로자의 동의를 포함한 노사합의를 하시고 지원을 신청하시면 됩니다.

< 특별고용지원업종 일반 절차 VS 신속지원프로그램: 노사합의를 통해 선택 >

특별고용 지원업종	일반절차	⇒	유급휴업 1개월 실시	⇒	무급휴직 실시 (30일 전 신고)	최대 180일 1일 최대 6.6만원
	<u>신속지원 프로그램</u>			⇒	<u>즉시 무급휴직 실시 (7일 전 신고)</u>	<u>최대 90일 월 50만원</u>

* 일반절차와 신속지원프로그램 중 하나만 선택 가능(중복지원 불가)

8. 언제부터 새로운 요건에 의한 신청이 가능한가요?

-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이 이루어진 '20.4.27. 이후 실시할 무급 휴직에 대해 7일 전 무급휴직 고용유지계획 신청서를 제출하고
- 고용센터의 승인을 받은 후 무급휴직 실시한 경우부터 적용됩니다.
- '20.9.15.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될 계획으로 8.16.까지 무급휴직 조치계획을 제출한 경우(30일 이상 무급휴직)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.

9. 이전에 실시한 무급휴직에 대해서는 지원되지 않나요?

- 4.27. 이전에 실시한 무급휴직에 대해서는 소급하여 지원하지 않습니다.

- 이는 소급 지원 시 실제 무급휴직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부정수급 등 제도 악용가능성이 높다는 점 등을 고려한 것입니다.
- '20.4.27. 이전('20.3.1.~4.27.)에 실시한 무급휴직에 대해서는 신설되는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

10. 얼마나 지원받을 수 있나요?

- 현행 요건에 따른 무급휴업·휴직 고용유지지원금은 평균임금의 50% 수준에서 일 최대 6.6만원, 최대 180일까지 지원가능*합니다.

* 무급휴업·휴직 계획 승인시 결정

- 새로운 요건에 따라 특별고용지원업종에서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한 경우에는 총 90일(3개월) 간 최대 150만원(월 50만원*)을 지원할 계획입니다.

*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유사 지원사업(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 사업,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등)과 지급수준을 동일하게 설정

11. 모든 피보험자에게 지원되나요?

- 피보험자격 취득일이 2020.2.29. 이전(2020.2.29. 포함)인 피보험자가 지원 대상입니다.
- 다만, 1개월 미만 고용되는자(일용근로자),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해고가 예고된 자와 경영상 이유에 따른 사업주 권고에 따라 퇴직이 예정된 자 등은 지원되지 않습니다.

참고 5 코로나19 특별고용지원업종 고용유지지원금 처리 기준

□ 개요

-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지정된 업종(이하 “지정업종”)의 지원대상 사업주의 고용유지조치(휴업, 휴직)를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실업 예방

□ 지원대상

- 지정업종의 지원대상 사업주가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원기간 동안 「고용보험법」 제21조에 따라 휴업, 휴직 등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고 수당을 지급한 경우

□ 특별지원 내용

-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 인정요건 완화

구 분	지원 요건
유급휴업·휴직 고용유지지원금	지정업종에 해당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「고용보험법 시행규칙」 제24조에 따른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로 봄
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 (다음 지원요건 중 하나를 갖추어야 함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① 휴직기간이 시작되기 전 1년 이내에 「고용보험법 시행령」 제19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고용유지 조치를 1개월 이상 실시하고 30일 이상 무급휴직을 실시한 경우 ② ①에도 불구하고, 긴급한 경영악화로 시행령 제19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고용유지 조치 실시없이 무급휴직 실시가 불가피하다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사업주가 30일 이상 무급휴직을 실시한 경우

* 무급휴직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신고하려는 경우에는 「고용보험법 시행규칙」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“휴업 등 고용유지조치 요건”에 해당해야 함

○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수준 우대

사업명	일반업종 지원 내용	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원 내용
<p>유급휴업 (총근로시간의 20%를 초과하여 단축근무)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사업주가 지급한 휴업수당의 2/3 (대규모기업 1/2~2/3) 지원 * 1일 66,000원 한도(연 180일까지) ** '20.2.1.~'20.3.31.까지 실시한 고용유지조치에 대해 3/4 (대규모기업 2/3) *** '20.4.1.~'20.6.30.까지 실시한 고용유지조치에 대해 9/10(2/3) **** '20.7.1.~'20.7.31.까지 실시한 고용유지조치에 대해 3/4(2/3)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사업주가 지급한 휴업수당의 9/10 (대규모기업 2/3~3/4) 지원 * 1일 7만원 한도(연 180일까지, 단 대규모기업은 1일 6.6만원 한도)
<p>유급휴직 (1개월 이상 휴직 부여)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사업주가 지급한 휴직수당의 2/3 (대규모기업 1/2~2/3) 지원 * 1일 66,000원 한도(연 180일까지) ** '20.2.1.~'20.3.31.까지 실시한 고용유지조치에 대해 3/4 (대규모기업 2/3) *** '20.4.1.~'20.6.30.까지 실시한 고용유지조치에 대해 9/10(2/3) **** '20.7.1.~'20.7.31.까지 실시한 고용유지조치에 대해 3/4(2/3)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사업주가 지급한 휴직수당의 9/10 (대규모기업 2/3~3/4) 지원 * 1일 7만원 한도(연 180일까지, 단 대규모기업은 1일 6.6만원 한도)
<p>무급휴업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심사위원회가 근로자 평균임금의 50% 범위 내 결정 * 1일 66,000원 한도(최대 180일) ** 근로자 직업능력향상프로그램 1명당 10만원 범위 내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심사위원회가 근로자 평균임금의 50% 범위 내 결정 * 1일 66,000원 한도(최대 180일) ** 근로자 직업능력향상프로그램 1명당 10만원 범위 내
<p>무급휴직 (일반절차)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심사위원회가 근로자 평균임금의 50% 범위 내 결정 * 1일 66,000원 한도(최대 180일) ** 근로자 직업능력향상프로그램 1명당 10만원 범위 내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심사위원회가 근로자 평균임금의 50% 범위 내 결정 * 1일 66,000원 한도(최대 180일) ** 근로자 직업능력향상프로그램 1명당 10만원 범위 내

사업명	일반업종 지원 내용	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원 내용
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무급휴직 (신속지원프로그램)</p>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관광·공연업 항공기취급업 등 코로나 19 대응 특별고용지원 업종만 해당 (조선업은 비해당) - 피보험자 1인당 총 지원일수 180일 중 90일(3개월)간 최대 150만원 (월 50만원) - 근로자 직업능력향상프로그램 1명당 10만원 범위 내

□ 지원(신청) 절차

- **유급휴업·휴직 고용유지지원금:** (고용유지조치 실시예정일 전날까지) 매월 고용유지조치 계획서 제출(사업주 → 고용센터) ⇒ 고용유지조치 실시(사업주) ⇒ 매월 지원금 신청(사업주 → 고용센터) ⇒ 사실관계 확인 후 지원금 지급(고용센터 → 사업주)
- **무급휴업·휴직 고용유지지원금:** (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고자 하는 날 30일 전까지) 고용유지조치 계획서 제출(사업주 → 고용센터) ⇒ 지방고용노동청별로 설치된 심사위원회 개최 후 승인통보(고용센터→ 사업주) ⇒ 고용유지조치 실시(사업주) ⇒ 매월 지원금 신청(사업주 → 고용센터) ⇒ 사실관계 확인 후 지원금 지급(고용센터 → 근로자, 사업주)
- **무급휴직 신속지원프로그램 특별고용지원업종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:** (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고자 하는 날 7일 전까지) 고용유지조치 계획서 제출(사업주 → 고용센터) ⇒ 직업안정 기관의 장이 승인 여부 결정(고용센터→ 사업주) ⇒ 1개월 단위로 고용유지조치 실시(사업주) ⇒ 다음 달 5일 까지 매월 지원금 신청(사업주 → 고용센터) ⇒ 사실관계 확인 후 지원금 지급(고용센터 → 근로자, 사업주)

□ 경과조치 등

- 「고용보험법 시행령」 제19조에 따라 사업주가 실시한 고용유지조치가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원기간인 경우에 한해 지원
- 「무급휴직 신속지원프로그램」은 고시 시행 이후 고용유지조치계획 신고서를 제출하고 이에 따라 실시한 고용유지조치가 2020년 9월 15일까지인 기간에 한해 지원

□ 참고사항

- 고용보험시스템상 관광산업 및 공연업은 “특정현안고용유지사유”에 「관광·공연업 등 특별고용지원 업종」, 항공지원서비스업 및 면세점업 등은 「항공기취급업 등 특별고용지원 업종」으로 반드시 입력
- 특별고용지원 업종에 대한 특별지원 내용 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현행 법령 적용*

* 「고용보험법」 제20조, 「고용보험법 시행령」 제19조~제21조, 「고용보험법 시행규칙」 제24조~제34조, 무급휴업·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지급규정(고용노동부 고시 제2019-62호, 2019.12.3.) 등

→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(www.law.go.kr)에서 현행 법령 조회 가능